기록관리일반 표준

NAK/S 19-2:2013(v1.0)

National Archives Standard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v1.0)

Disclosure of Public Records-Part 2: Archives(v1.0)

Version 1.0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3년 12월 30일 제정

○ 제 정 자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

○ 제 정 일 : 2013년 12월 30일(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52호)

○ 심　　의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표준전문위원회

○ 원안작성 :

- 길기태(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 박혜은(국가기록원 사서주사보)
- 이영도(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 검　　토 :

- 노영종(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이젬마(국가기록원 사서사무관)
- 이한희(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 관　　리 :

-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 자　　문 :

-

(1)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표준열람 :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기록관리안내→기록관리표준→표준화 현황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표준협력과(042-481-6248, 6331)
  기록정보서비스부 공개서비스과(042-481-6287)

(2) 이 표준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National Archives of Korea(2013). All Rights Reserved.

목 차

머리말 ····· iii

1 적용범위 ····· 1

2 적용근거 ····· 1

3 용어정의 ····· 2

4 일반사항 ····· 3
4.1 공개관리 원칙과 절차 ····· 3
4.1.1 원칙 ····· 3
4.1.2 공개관리 업무절차 ····· 4
4.2 공개관리 기준 ····· 5
4.2.1 공개재분류 기준 ····· 5
4.2.2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 6
4.3 업무담당자의 역할과 의무 ····· 6
4.4 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6
4.4.1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 6
4.4.2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 7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 관리 ····· 8
5.1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 8
5.1.1 공개재분류 대상 선정 ····· 8
5.1.2 공개재분류 계획 수립 ····· 9
5.1.3 기록물 유형분류 ····· 9
5.1.4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검토 ····· 10
5.1.5 공개재분류 기준서 및 검토서 작성 ····· 10
5.1.6 생산기관 의견조회 ····· 12
5.1.7 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 12
5.1.7.1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 ····· 12
5.1.7.2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 13
5.1.8 공개여부 확정 및 결과 반영 ····· 13

5.1.9 공개재분류 결과의 후속조치 ····· 14

부속서 A (참고) 공개재분류 기준서 서식 예시 ····· 15

부속서 B (참고) 공개재분류 기준서 예시 1 (30년 경과) ····· 17

부속서 C (참고) 공개재분류 기준서 예시 2 (5년 주기) ····· 20

부속서 D (참고) 공개재분류 검토서 서식 예시 ····· 23

부속서 E (참고) 공개재분류 검토서 예시 ····· 24

부속서 F (참고)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예시 1 (30년 경과) ····· 25

부속서 G (참고)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예시 2 (5년 주기) ····· 30

부속서 H (참고) 법령조견표 ····· 34

부속서 I (참고) 공개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 35

머리말

이 표준은 2010년 제정된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의 후속표준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기록물 공개재분류의 업무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표준은 제4절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에서의 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 전반에 관한 원칙과 절차 및 공개재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담당자의 역할 및 의무를 제시하였다. 제5절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의 실제적인 업무절차를 설명하였으며, 30년 경과 및 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업무 절차에 따른 세부내용에 대해서 다루었다.

또한, 부속서를 통해 공개재분류 기준서, 공개재분류 검토서,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세부기준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공개재분류 업무에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표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공개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업무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표준은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국가기록원이 유지·관리한다. 이 표준은 관련 법령의 개정,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요청 등 개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한다.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공개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비공개 기록물(부분공개 기록물을 포함한다)의 공개업무 수행 시 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근거

2.1 법적 근거

이 표준의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2.2 인용표준

해당사항 없음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 NAK/S 19-1:2012(v1.1)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v1.1)

3 용어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공개

정보나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기록을 제공하는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3.2 공개구분

공개여부를 분류하는 것.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중 하나로 결정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3.3 공개재분류

기록물의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 다만, 한번 공개된 것은 이미 비공개의 의미를 상실하였으므로 재분류 대상은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3.4 기록관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을 생산부서로부터 인수하고 일정기간 보존하며, 나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5 부분공개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 참조하여 개작]

3.6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참조하여 개작]

3.7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3.8 특수기록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록관

4 일반사항

4.1 공개관리 원칙과 절차

4.1.1 원칙

기록물 공개는 국가 정책의 책임을 설명하여 국민의 국정참여를 증대시키고, 신분·재산과 권익의 보호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며, 학술연구·교육자료 등 학술·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각급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부터 이관받아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기록물 건에 공개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기록물의 나머지 내용 정보를 가능한 공개함으로써, 비공개 대상 정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재분류하여 비공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4.1.2 공개관리 업무절차

공개재분류 대상이 되는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된 비공개 기록물과 비공개로 재분류된 지 5년이 지난 기록물이다.

공개재분류 업무담당자는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기록물을 실사(實査)하여 검토한 후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고 기록물 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1.3 기록물 유형분류를 참조한다.

기록물 검토가 끝난 후, 업무담당자는 생산기관에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생산기관과의 의견조회가 끝난 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물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특히,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재분류할 때는 기록물 공개심의회의 심의 거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최종 결과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공개재분류의 최종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며,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은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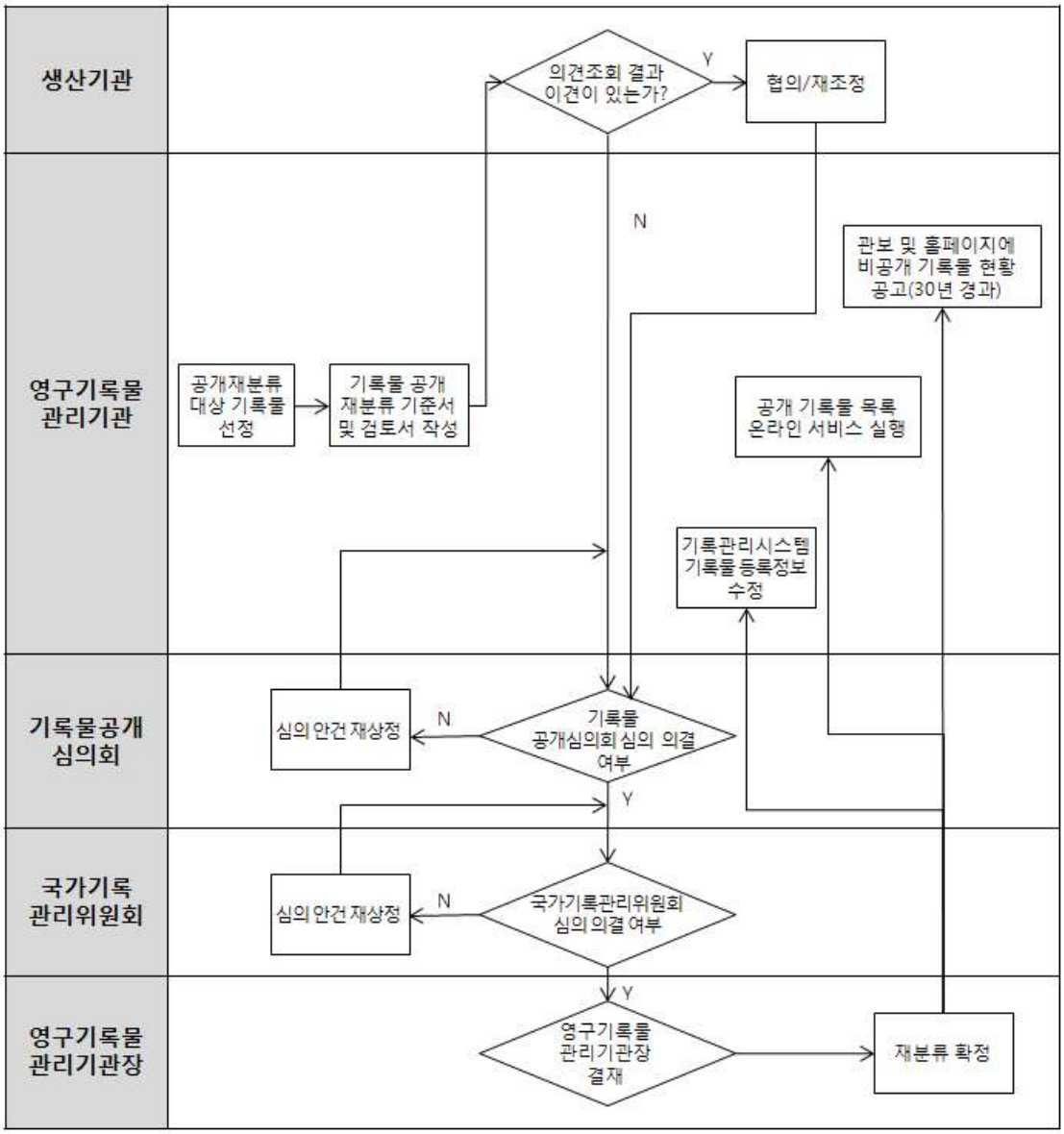


그림 1 - 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 절차도

4.2 공개관리 기준

4.2.1 공개재분류 기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수행할 때 다음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공개 원칙” 적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포함 여부
- 동종(同種) 유형 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적용

4.2.2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수행하면서 ‘기록물 공개재분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록물 공개재분류 세부기준은 공개재분류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 이 기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한 주기적인 공개재분류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결재 또는 심의를 거쳐 공식화하여야 한다.

기록물 공개재분류 세부기준은 기록물을 생산기관별로 구분 후, 기록물 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기록물 공개재분류 세부기준’은 부속서 [F], [G]를 참조한다.

4.3 업무담당자의 역할과 의무

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담당자는 비공개 기록물이 공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4.4 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4.4.1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3명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4명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4.2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기록물공개심의회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여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 성격별 비공개 상한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개록물 제한적 열람청구 사항 중 열람결정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재심의 요청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6항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록물 재분류 및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공개 여부
- 기타 기록물 공개·열람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기록물공개심의회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심의 내용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작성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 관리

5.1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아 보존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기록물 공개재분류 대상은 생산 후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과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이다.
특히, 생산 후 30년이 경과된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의 경우,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생산기관 의견 수렴시 생산기관의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비고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원칙'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을 참조한다.

5.1.1 공개재분류 대상 선정

생산 후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과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대상을 선정한다.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대상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이다.

보기 1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대상(2014년일 경우)
- 생산연도가 1984년 이전인 비공개 기록물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대상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지 5년이 지난 기록물이다.

보기 2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대상(2014년일 경우)
- 2009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과 이관시 비공개 기록물

5.1.2 공개재분류 계획 수립

공개재분류 업무담당자는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재분류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전체 재분류 대상량, 추진일정, 수행절차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공개재분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계획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개재분류 대상량
- 수행 주체 및 업무 절차
- 추진 내용 및 일정
- 기록물 접근허가 및 원본 반출 여부
-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방법

5.1.3 기록물 유형분류

공개재분류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 기록물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생산기관의 업무 분석을 통해 소기능 또는 단위과제를 도출한다.

기록물 유형은 공통업무와 고유업무로 나누어 분류하고, 업무유형에 따라 세부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에 업무분류체계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보기 1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유형 예시(23개)

- 외교, 감사, 소청·소원·소송, 인사·징계, 인·허가, 국유재산, 시설·공사, 개인, 법령·예규, 건설·토목, 사회·복지, 수사, 정보·보안, 외사, 재산, 문화재, 병무, 토지(농지개혁, 지적, 토지일반), 지방행정, 국적관리, 학적관리, 기타

보기 2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세부유형 예시(인사·징계 기록물 유형의 경우)

-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신원조회, 임용, 인사발령, 징계, 상훈, 연금·기여금

5.1.4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검토

업무담당자는 기록물을 공개재분류 하기 위하여 해당 기록물의 위치, 수량 및 기록물의 목록과 실물의 일치여부, 첨부파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의 경우 기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서고에서 해당 기록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5.1.5 공개재분류 기준서 및 검토서 작성

업무담당자는 기록물 유형별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하고, 기록물건(철)별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는 기록물 유형별로 일관성 있는 공개재분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의

경우,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 관련 판례·보도기사 등을 분석하여 비공지성 상실[1]과 비공개 필요성 상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는 기록물의 생산기관, 생산년도, 수량, 상세내용(구성 및 구체적 내용) 및 공개재분류 이력, 공개여부 검토의견, 비공개 대상정보, 생산기관 의견조회(문서번호, 의견)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판단 및 상황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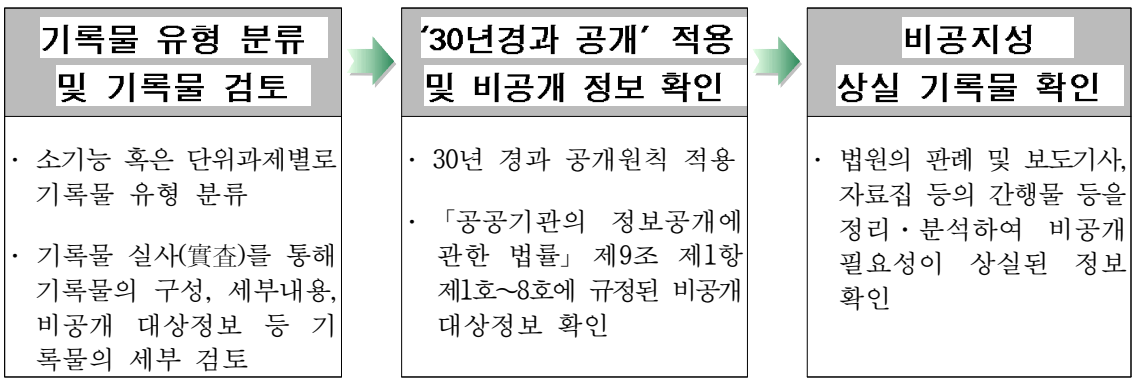


그림 2-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작성 절차도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는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안건 상정 시 활용하고, 재분류 결정 후에도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를 위한 대상 목록 선정 및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비고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서식 예시는 부속서[A], 기준서 예시는 부속서[B],[C]를 참조한다.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는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참조하여 기록물건별로 공개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기록물건명, 기록물철명, 생산연도, 재

1) ‘비공지성 상실’이란 비공개·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라면 보호가치가 없음을 말한다.

분류 전후 공개구분 및 공개제한유형, 재분류 검토일 및 검토의견, 비공개 대상정보 등을 기술한다.

비고 공개재분류 검토서 서식 예시는 부속서[D], 검토서 예시는 부속서[E]를 참조한다.

5.1.6 생산기관 의견조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행정적·법적 사항 및 진행 중인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록물 생산기관에 공개재분류 의견을 조회·청취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목록과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등을 첨부하여 기록물 생산기관에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 협의·조정단계를 거친다. 특히,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할 때는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록물 생산기관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생산부서에서 비공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비공개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사업무의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을 받으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의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1.7 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공개재분류 업무 담당자는 공개재분류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7.1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

공개재분류 업무 담당자는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검토의견과 각 생산기관의 의견을 검토·조정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업무 담당자가 작성한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기록물의 공개 여부 및 비공개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개재분류 업무 담당자는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한다.

비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 결과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생산하고 녹음기록의 경우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지정고시(국가기록원 고시 제2013-2호, 2013. 8. 20 관보))

5.1.7.2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에 따라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생산 후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공개재분류 업무 담당자는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 생산 후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재분류 업무 담당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정리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한다.

5.1.8 공개여부 확정 및 결과 반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결재를 거쳐, 공개여부가 확정된 기록물에 대해

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국가기록원의 경우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의 등록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5.1.9 공개재분류 결과의 후속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공개재분류가 완료된 기록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결과 공개(부분공개 포함)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하여야 한다.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속서 A (참고)
공개재분류 기준서 서식 예시

• 검토번호 : 30년 경과 비공개/5년 주기 재분류 - 작성연도 - 생산기관 - 일련번호

<table>
<tr><td colspan="4">■ 대상 기록물</td></tr>
<tr><td>기록물 유형</td><td colspan="3">▢외교 ▢감사 ▢소청・소원・소송 ▢인사・징계 ▢수사 ▢정보・보안 ▢외사
▢법무・행형 ▢인・허가 ▢국유재산 ▢재산 ▢시설 ▢문화재관리 ▢개인 ▢병무
▢건설・토목 ▢토지(▢농지개혁▢지적▢토지일반) ▢지방행정 ▢사회・복지
▢국적관리 ▢학적관리 ▢법령・예규 ▢기타</td></tr>
<tr><td>생산기관 및 처리부서</td><td colspan="3"></td></tr>
<tr><td>기록물 제목</td><td colspan="3"></td></tr>
<tr><td>생산년도</td><td colspan="3"></td></tr>
<tr><td>수량</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 기록물 내용</td></tr>
<tr><td>개요</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상세내용</td><td colspan="3">・철명 :</td></tr>
<tr><td colspan="3"></td></tr>
<tr><td colspan="4">■ 재분류 결과</td></tr>
<tr><td>기록물 유형</td><td>기존 공개이력</td><td>재분류 의견</td><td>사유 및 근거</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 검토의견</td></tr>
<tr><td colspan="4"></td></tr>
<tr><td>비공개 대상정보</td><td colspan="3"></td></tr>
<tr><td>생산기관</td><td>문서번호</td><td colspan="2"></td></tr>
</table>

의견조회	의견	

■ 기록물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대상 기록	비공개 대상정보

부속서 B (참고)
공개재분류 기준서 예시 1 (30년 경과)

• 검토번호 : 30년 경과 비공개 - 2013 - ○○청 - 01

■ 대상 기록물	
기록물 유형	□외교 □감사 □소청·소원·소송 ■인사·징계 □수사 □정보·보안 □외사 □법무·행형 □인·허가 □국유재산 □재산 □시설 □문화재관리 □개인 □병무 □건설·토목 □토지(□농지개혁□지적□토지일반) □지방행정 □사회·복지 □국적관리 □학적관리 □법령·예규 □기타
생산기관 및 처리부서	○○청 총무과
기록물 제목	승급, 인사발령대장, 징계의결서, 징계처리대장
생산년도	1949～1983년
수량	38권
■ 기록물 내용	
개요	○○부의 공무원 인사발령, 승급, 징계 관련 기록물철임
상세내용	・철명 : **《인사발령대장》, 《승급》 등 32권**
	○《인사발령대장》에는 발령년월일, 발령사항, 직명, 성명, 적요(발령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승급》철은 유사경력의 통합과 관련된 기록물철로 승급심사와 관련한 기록물과 <유사경력통산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음. - <유사경력통산신청서>에는 근무처, 직종 및 직급, 임용일자, 면직일자, 재직기간, 적용환산율,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력증명원, 재직증명서, 임면관계철,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성명, 생년월일, 근무년한, 주민등록번호, 최종직급, 최종직위, 최종학력, 근무처 등 기재) 등이 첨부되어 있음

	・철명 : 《징계의결서》, 《징계처리대장》 등 6권
	○《징계의결서》는 <공무원 징계의결 결과통보>, <징계 혐의자 출석통지서 교부>, <공무원 문책>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무원 징계의결 결과통보>에는 직위해제자의 소속, 직급, 성명, 징계의결내용, 징계의결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징계 혐의자 출석통지서 교부>에는 확인서 및 문답서, 출석통지수령증 등이 첨부되어 있음 ・확인서에는 혐의자의 성명, 소속, 직명, 주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통지서수령거부사유, 전달확인자 및 입회관의 성명, 소속, 직급 등이 기재되어 있음 ・문답서에는 본적, 주소, 생년월일, 소속 및 직급, 성명, 문답내용, 답변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 ・출석통지수령증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 성명, 수령자의 성명, 전달확인자의 소속, 직명, 성명 등 기재되어 있음 - <공무원 문책>에는 문책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음 ○《징계처리대장》은 처벌대장으로 징계자의 소속, 직급, 성명, 직위해제 등의 조치구분, 조치일자, 적발내용, 적발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재분류 결과

기록물 유형	기존 공개이력	재분류 의견	사유 및 근거
인사발령	비공개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징계	비공개	부분공개	

■ 검토의견

○ 인사발령(부분공개, 6호)

- 발령년월일, 발령사항 등의 승급 및 인사발령 사항이 담겨진 생산 후 30년이 경과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최종학력 등 개인정보와 경력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개인증빙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table>
<tr><td colspan="3">○ 징계 (부분공개, 6호)
- 징계 관련 내용이 담겨진 생산 후 30년이 경과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공개하되, 징계대상자 및 징계위원의 이름, 주소, 본적 등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td></tr>
<tr><td>비공개
대상정보</td><td colspan="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td></tr>
<tr><td rowspan="2">생산기관
의견조회</td><td>문서번호</td><td>○○청 운영지원과 - 0000호(2013.06.13.)</td></tr>
<tr><td>의견</td><td>국가기록원 검토의견에 동의</td></tr>
</table>

■ 기록물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대상 기록	비공개 대상정보
인사발령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경력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개인증빙기록
징계	- 징계협의자・대상자・처분자 및 관련인의 이름, 본적 및 주소(읍면동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속서 C (참고)
공개재분류 기준서 예시 2 (5년 주기)

• 검토번호 : 5년 재분류 - 2012 - ○○○○부 - 01

■ 대상 기록물	
기록물 유형	▢외교 ▢감사 ■소청·소원·소송 ▢인사·징계 ▢수사 ▢정보·보안 ▢외사 ▢법무·행형 ▢인·허가 ▢국유재산 ▢재산 ▢시설 ▢문화재관리 ▢개인 ▢병무 ▢건설·토목 ▢토지(▢농지개혁▢지적▢토지일반) ▢지방행정 ▢사회·복지 ▢국적관리 ▢학적관리 ▢법령·예규 ▢기타
생산기관 및 처리부서	○○○○부 총무과
기록물 제목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생산년도	1990~1992년
수량	35권
■ 기록물 내용	
개요	소송 등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음
상세내용	· **철명 : 행정심판, 소송신청사항, 행정소송 등 (35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관한 기록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회부문서로,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취소공문, 이의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사건명, 청구인, 병역사항, 처분내용, 처분취소 근거 및 이유, 종합적 답변), 행정심판청구서(청구인, 피청구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송달서(청구인, 심판청구내용,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이 첨부되어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계획문서로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안건자료가 첨부되어 있

	음 · 〈결과보고〉 : 행정심판위원회 심의결과보고 문서로, 청구인 의결내용(청구인, 피청구인, 청구내용, 의결일자, 의결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행정심판 재결서(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성명, 본적, 학력, 병역사항, 피청구인, 주문, 심판청구 취지, 이유),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취지, 이유, 근거법조)가 첨부되어 있음 - **《행정소송》** · **소송사건 접수보고** : 행정소송 접수에 따른 보고문서로,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변론일시,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답변서와 입증서류, 소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변론기일 소환장 등이 첨부되어 있음 · 〈행정소송 상황보고〉 : 행정소송 과정에 대한 상황보고 문서로, 원고측 주장, 피고측 주장, 차회기일, 소송수행자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입증자료(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출석통지서, 역종변경통지서, 현역병입영통지서, 병적기록표, 재직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원고측 준비서면, 피고측 준비서면, 현역입영사실 확인서 등)와 답변서 등이 첨부되어 있음 · 〈소송결과보고〉 : 원고, 피고, 판결선고 연월일, 판결결과, 판결문 접수일자, 상소마감일, 소송물가액,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판결문 사본(사건명, 원고, 피고, 변론종결,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결일, 판사서명 등)과 소가증명원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되어 있음

■ 재분류 결과

기록물 유형	기존 공개이력	재분류 의견	사유 및 근거
행정소송· 행정심판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 검토의견

○ 행정소송·행정심판 (부분공개/비공개, 5호, 6호, 7호)

- 해당 기록물은 기록물 전체에 회의록 등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준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
- 단, 판결문의 경우,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등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정보	
생산기관 의견조회	문서번호	○○○○부 운영지원과 - 0000호(2013.6.30.)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에 동의

■ 기록물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대상 기록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소송 ·행정심판	- 회의록 등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 - 판결문의 원고 및 피고 등의 이름, 주소(읍·면·동 이하) 등 개인정보 -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준하는 정보

부속서 D (참고)
공개재분류 검토서 서식 예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관리 번호	기 록 물 철명	생산 기관	생산 년도	등록 번호	건명	시작 쪽	끝 쪽	공개 구분	공개 제한 유형	재분류 검토일	재분류 검토 의견	재분류 공개 구분	재분류 공개 제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 제한 쪽

①의 "**관리번호**"는 기록물에 대한 식별번호로서, 관리번호, 철 관리번호, 서고관리번호 등 기관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⑫의 "**재분류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한다.

⑩의 "**공개제한 유형**"과 ⑭의 "**재분류 공개제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8호 중 해당 항목을 기재한다. (복수로 기재 가능)

⑮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①~⑮의 항목은 필수사항이며, ⑯은 임의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부속서 E (참고)
공개재분류 검토서 예시

관리번호	기록물철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등록번호	건명	시작쪽	끝쪽	공개구분	공개제한유형	재분류검토일	재분류검토의견	재분류공개구분	재분류공개제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공개제한쪽
	감사결과통보서	감사원	2000	2-1	직무관련 금품수수	11	14	비공개	6	070902	감사결과통보로 비위관련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부분공개	6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대장	11-13
	인사발령 원본	재정경제부 총무과	1990	9-1	인사발령	112	113	비공개	6	070902	인사발령 기록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부분공개	6	주민등록번호, 주소	113
	1993년 6급이하 임용철(1)	재정경제부 총무과	1993	1-1	임용결과 통보	1	36	비공개	6	070902	임용기록으로 개인정보와 개인증빙기록이 대부분이므로 비공개	비공개	6		

부속서 F (참고)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예시 1 (30년 경과)

유형	세부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비공개 대상정보
인사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카드, 퇴직자인사기록카드 등	비공개(6호)	인사기록카드는 주민등록번호, 본적, 병역관계, 재산사항 등 공무원 개인정보가 대부분이고, 호적초본, 신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개인증빙기록이 첨부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전체
	이력서	이력서철, 비현재직원이력서철 등	비공개(6호)	이력서 관련 기록은 개인정보가 대부분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전체
	신원조회	신원조사대장, 신원조회서 등	비공개(6호)	신원조사 관련 기록에는 신원조사 대상자의 성명과 직급, 직위, 신원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이 첨부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전체

	임용	임용관계철, 임명, 특별채용, 전문직채용계약 등	부분공개(6호)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임용 관련 기록물은 이미 사안이 종결되어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되, 임용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및 신원보증서, 이력서, 사직원, 복직원 등 개인증빙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생년월일, 본적, 주소(읍면동 이하), 연령, 주민등록번호, 경력, 최종학력, 연금번호 등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신원증명서, 민간인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 신원조사서, 이력서 등 개인증빙기록
	인사발령	인사발령철, 인사발령관계철, 인사발령대장, 인사발령원본, 사령원부 등	부분공개(6호)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인사발령 기록물은 이미 사안이 종결되어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병적확인서,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표, 호적등본 등 개인증빙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생년월일, 본적, 주소(읍면동 이하), 연령, 주민등록번호, 경력, 최종학력, 연금번호 등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신원증명서, 민간인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 신원조사서, 이력서 등 개인증빙기록
	징계	징계의결서, 징계요구서 등 징계처리대장, 비위면직자명단철, 상벌기록부 등	부분공개(6호)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징계 관련 기록물은 이미 사안이 종결되어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되, 징계대상자의 이	·징계협의자・대상자・처분자 및 관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읍면동 이하) 등 개인정보

				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상훈	상훈대장, 공적심사회의록 등	부분공개(6호)	상훈관련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훈자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등)는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 있는 정보로 간주 할 수 있으며, 정부 방침 또한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를 고취하기 위해 공적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는 점(안전행정부「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고려하여, 수훈자의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을 제외하고 수훈자의 성명, 소속, 직급, 주요공적, 훈격 등은 공개(부분공개)	·수훈자의 본적, 주소(읍·면·동 이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읍면동 이하)
	연금・기여금	재직기간합산, 퇴직연금관계문서, 퇴직급여청구관계 기여금납입총괄표, 기여금입금통지서, 유족보상금 등	비공개(6호)	재직기간합산 및 연금관련 기록물은 기록물 전체가 연금 기여금, 재직기간합산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각종 경력증명원 등 개인증빙기록이 대부분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전체
감사		감사원 특수관리 관계, 특별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문서 등	부분공개(6호, 7호)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감사관련 기록물은 이미 사안이 종료되어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하였고, 최근 감사원에서도 홈페이지(분야별 감사결과)를 통해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름, 주소, 본적,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및 법인·단체의 명칭, 주소와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감사 대상자의 이름, 주소·본적(읍면동 이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등 개인정보 ·법인·단체의 명칭, 주소 등과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소송	소송(송무), 소송관계철 등	부분공개(6호)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소송관련 기록물은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공개하되, 원고 및 관련자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와 개인증빙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원고 및 관련자 이름, 주소(읍면동 이하) 등 개인정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병적기록표, 채용신체검사서 등 개인증빙기록
소청	소청사건, 소청사건 결정통지, 소청심사결정문 등	부분공개(6호)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소청관련 기록물은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공개하되, 원고 및 관련자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와 개인증빙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소청인, 피소청인, 징계혐의자의 이름, 주소(읍면동 이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소원	소원재결서,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철 등	부분공개(6호)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소원관련 기록물은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공개하되, 원고 및 관련자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와 개인증빙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소원인의 주소(읍면동 이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연령, 병역상황, 재산정도 등 개인정보
법령・예규	법령관계철, 법령개정관계철, 훈령예규관계철, 규칙원안,	공개 /부분공개(6호)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법령・예규 관련 기록물은 이미 사안이 종결되어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른 30년 경과 비공개 기	·민원인의 이름, 주소(읍면동 이하) 등 개인정보

		훈령원안, 예규원안 법령질의회보철 등		록물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되, 민원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기타	기록관리	보존문서기록대장, 보존문서인계이관서, 폐기문서대장 등	공개	기록관리 기록물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없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	-
	관인관리	관인대장, 관인폐기대장, 직인등록대장 등	부분공개(6호)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관인 관련 기록물은 이미 사안이 종결되어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되, 새긴사람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새긴 사람의 이름, 주소(읍면동 이하) 등 개인정보

부속서 G (참고)
공개재분류 세부기준 예시 2 (5년 주기)

유형	세부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비공개 대상정보
인사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카드, 퇴직자인사기록카드 등	비공개(6호)	인사기록카드는 공무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병역관계, 신체사항, 재산사항, 정당사회단체 정보, 학력, 이력사항, 징계·형벌사항, 근무성적평정 등 개인정보 및 호적등본, 신원증명서, 병적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개인증빙기록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전체
	이력서	이력서철 등	비공개(6호)	이력서 관련 기록은 개인정보가 대부분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전체
	신원조회	신원조회관계철, 신원조사철 등	비공개(6호)	신원조회 관련 기록물은 신원진술서, 신원증명서, 이력서,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전체
	임용	공무원임용, 임용시험, 신규채용 등	부분공개(5호, 6호)	공무원의 임용, 전보, 임면 등 인사 기록으로, 승진임용심의회의록, 승진후보자명부, 시험실시결과보고서, 문제지, 답안지, 시험지 및 생년월일, 학력, 인품, 능력 등 개인정보와 인사기록카드, 신원증명서, 이력서, 응시원서, 수료증서, 사직서, 재적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증	·승진임용심의회회의록 ·시험점수, 평균, 합격판정, 평점, 승진후보자명부, 시험결과보고, 응시원서, 응시자현황, 문제지, 답안지, 시험지 등

				빙기록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인사업무 관련 정보 ·승진서열, 생년월일, 최종학력, 인품, 능력 등의 개인정보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신원증명서, 수료증서, 확인서, 재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등 개인증빙기록
	인사발령	인사발령원부, 인사발령대장 등	부분공개(6호)	인사발령과 관련된 기록물로 공무원의 생년월일, 본적, 주소, 연령, 주민등록번호, 경력, 최종학력, 연금번호 등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신원증명서, 민간인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 신원조사서, 이력서 등 개인증빙기록을 포함하고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생년월일, 본적, 주소(읍면동 이하), 연령, 주민등록번호, 경력, 최종학력, 연금번호 등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신원증명서, 민간인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 신원조사서, 이력서 등 개인증빙기록
	징계	징계의결서, 징계처리대장, 징계처분자 명단, 징계요구서 등	비공개(6호)	징계 관련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전체
	상훈	상훈대장, 표창대장, 포상대장 공적심사위원회, 공심의결서(상훈심사원안철) 등	공개 /부분공개(6호) /비공개(5호, 6호)	상훈관련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훈자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등)는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 있는 정보로 간주 할 수 있으며, 정부 방침 또한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를 고취하기 위해 공적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는 점(안전행정부「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고려하여, 수훈자의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을 제외하고 수훈자의 성명, 소속, 직급, 주요공적, 훈	·수훈자의 본적, 주소(읍·면·동 이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공적심사 관련 기록

				격 등은 공개(부분공개) 공적심사 관련 기록은 포상결정 이전에 공적대상자 명부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연금・기여금	재직기간합산, 기여금연금관리, 기여금납부서철, 기여금납부내역총괄표, 연금대부영수증철, 퇴직연금청구서 등	비공개(6호)	연금 관련 기록물은 기록물 전체가 연금 기여금, 재직기간합산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이 대부분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전체
감사		감사결과처분지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특별감사조치결과 등	부분공개(6호, 7호)	감사관련 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하되, 비위공무원의 징계 등 문책사항과 인사 관련 정보(성명, 경고장, 주의장) 및 관련 업체 정보(단체명,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감사 대상자의 이름, 주소·본적(읍면동 이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등 개인정보 · 법인·단체의 명칭, 주소 등과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판결문, 손해배상관계철, 구상권관계철, 배상결정서철 등	비공개(6호) /부분공개(6호)	소송관련 기록물은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 개인과 관련된 상세한 기록과 증빙서류들이 함께 편철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며, 소송 판결문 등은 개인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원고 및 관련자 이름, 주소(읍면동 이하) 등 개인정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병적기록표, 채용신체검사서 등 개인증빙기록

소청		소청사건, 소청사건 결정통지, 소청심사결정문 등	비공개(6호)	공무원의 파면 취소와 관련된 소청 기록물로, 해당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전체
소원		소원재결서,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철 등	비공개(6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직근상급청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절차로 개인 징계, 개인 신상, 개인 재산관련 증빙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전체
법령·예규		기본법·시행령개정 중요문서철, 법령관계참고철, 법개정의견, 법령제개정, 훈령관계철, 고시관계철, 각종규정관계서철 등	부분공개(5호, 6호)	법령 제개정 및 훈령·예규·고시등의 제개정 관련 기록으로, 관련 기관·부서의 검토의견 및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민원인의 이름, 주소(읍면동 이하) 등 개인정보 ·관련 기관·부서의 검토의견
기타	기록관리	문서이관, 보존문서기록대장, 문서관리대장 등	공개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이관 등 기록물 관리 관련 기록물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개	-
	관인관리	관인대장, 관인교부·승인·폐기 등	부분공개(6호)	관인(官印)의 제작 및 폐기 관련 기록으로, 새긴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새긴 사람의 이름, 주소(읍면동 이하) 등 개인정보

부속서 H (참고) 법령 조견표

표준 조항 1	표준조항 2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4 일반사항	4.1	기록관리법 제4조(공무원의 의무) 제2항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4.2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4.3	기록관리법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기록관리법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관리법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4.4	기록관리법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관리	5.1	기록관리법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기록관리법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관리법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5.2	기록관리법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항 기록관리법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기록관리법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5.3	기록관리법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기록관리법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부속서 I (참고) 공개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영 역	점검 항목	예	아니오
일반사항	비공개 기록물 공개 관리를 위해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세부기준을 수립하였는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심의를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관리	매년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매년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적정하게 선정하고 있는가?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재분류 하고 있는가?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재분류 하고 있는가?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적정하게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기록물 공개재분류시 기록물 생산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가?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에 대한 안건을 기록물 공개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안건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가?		
	공개・부분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가?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결과,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있는가?		